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451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451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가소1154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0. 4. 24.

판결 선고 2020. 5. 2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가소1154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수석컨설턴트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C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15,000,000원에 수급한 '경쟁회사 Clean PVC 수출 및 시장점유조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고 하도급대금 중 6,500,000원을 받은 후 시작한 그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금액, 즉 원고의 인건비 및 활동비용 8,840,000원과 이익분배금 3,080,000원의 총합계 11,920,000원 $\{=8,840,000\text{원} + 3,080,000\text{원}[(15,000,000\text{원} - 8,840,000\text{원}) \times 1/2]\}$ 에서 피고가 지급한 6,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5,420,000원 $(=11,920,000\text{원} - 6,500,000\text{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는 그 계약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은 D으로부터 대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용역을 수급한 후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점, 원고는 2018. 11. 7. C 앞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업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국제전문보고서 구입비 6,5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은 2018. 11. 13. 원고에게 위 6,5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자금집행 등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C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그와 같이 한 것일 뿐, 피고는 물론 원고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피고가 아닌 C으로 할 의사를 갖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용역수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C이 법인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있는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피고의 개인법인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인 C은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도 법인의 행위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인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룡

판사이순형

판사김정민